

I. 도입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9차 정기보고서(CEDAW/C/KOR/9)를 심의하고, 위원회의 최종견해 중 제13항의 (a), 제19항의 (b), 제27항의 (a), 제31항의 (a)를 이행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2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제출한다.

II.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조치

가. 최종견해 제13항의 (a) 이행을 위한 조치

협약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직·간접적인 차별, 그리고 빈곤 여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간성 여성, 장애 여성, 난민인정 신청 여성 및 난민 여성, 무국적 및 이주 여성, 농촌 여성, 미혼 여성, 청소년 및 노인 여성 등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집단의 여성 및 여아가 직면하는 교차적 형태의 차별을 다루면서, 법률상, 사실상의 형식적이고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차별금지법의 채택을 위한 구체적 일정을 설정한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혐오·차별 방지 법제화 검토 및 공론장 마련 추진’이 선정되었으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동 과제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6년 3월 기준, 국회에 2건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두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 및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되도록 하고,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성별 등을 명시적인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며, 간접·교차 차별도 포괄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여는 데에 협력하겠다.

나. 최종견해 제19항의 (b) 이행을 위한 조치

여성가족부의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여성가족부가 모든 정부 부처 전반에서의 성 주류화 노력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역량 강화를 제공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성평등정책을 소관하는 부처의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10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정책과 고용평등업무 등을 총괄하는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하였다.

또한, 성평등정책실을 소속으로 고용평등정책관과 성형평성기획과·성평등문화협력과·고용평등총괄과를 신설하고 총 17명의 인력을 확대하였다. 예산은 '26년 2조 87억 원으로 '25년 대비 13%(+2,303억 원) 증가하였으며, 여성노동·안전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성평등 현안 대응을 강화하고, 시·도 성평등 정책채널을 복원하는 등 성평등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총괄·조정기능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성평등 의제·현안 논의 활성화를 위해 양성평등위원회를 ‘본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 체계로 개편하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설치부처를 전부처로 확대하여 분야별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성별 차이와 특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직 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조직문화 현황을 진단하고 전 직원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는 등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정책 수행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별 직원 워크숍, 2030 직원 정부 혁신모임 운영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소통과 존중의 조직문화를 확산시켰다.

아울러, 직원 개인의 직무역량 향상 관련, 소속 직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폭력예방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특히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4대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였다. 더불어 성희롱 고충상담원(2명)을 대상으로 상담원 전문교육 및 심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공직가치 및 국정철학·주요 국정과제, 직무역량 향상 등과 관련하여 외부기관 연계 교육, 국내·외 위탁교육 등을 온·오프라인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연간 약 80시간의 교육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 최종견해 제27항의 (a) 이행을 위한 조치

국제 인권 기준에 따라 강간의 정의가 적극적이며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의 부재에 기반을 두고, 모든 비동의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부부 강간 등 모든 강압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다.

‘비동의 강간죄’의 도입 문제는 국내 성폭력범죄의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로 입증 책임의 원칙 및 형사절차상의 부담과 관련한 쟁점,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방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고려하여 향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배우자”를 범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부부강간죄 처벌이 가능하다.

라. 최종견해 제31항의 (a) 이행을 위한 조치

피해자/생존자의 구제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금전배상, 만족, 공식 사과, 재할 서비스를 포함하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제공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과 미래지향적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한일 과거사 현안 관련 우리 측의 원칙적인 입장을 지속 견지하고 있다.

먼저, 과거사와 연관된 일본 교과서 내 서술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세대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및 유엔총회 등을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지속 표명해 왔으며, 분쟁하 성폭력 철폐 및 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에 동참해 왔다.

특히 2018년 출범한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이니셔티브’ 하 2019년 이래 연례

국제회의를 개최해 왔으며 (2025.11월 제7차 국제회의 개최), 유엔인구기금 (UNFPA) 및 여성평화·인도주의기금(WPHF)과 협력하여 분쟁하 성폭력 예방·대응 및 평화 프로세스 내 여성 참여 확대 관련 사업도 진행해왔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 외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피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연구·기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생존하고 계신 고령의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지원금과 간병비 지원 수준을 확대하여 2026년 기준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97만 원으로 전년 188만 원에서 5% 인상하였으며, 간병비 역시 전년 대비 8% 인상된 372만 원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돌봄 지원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생활실태 및 정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자의 생활 여건과 지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향후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 법률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개정 법률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추모조형물(일명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기념물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향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역사 인식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기록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디지털 자료저장소인 「아카이브814(www.archive814.or.kr)」을 중심으로 국내외에 산재해 있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피해자 증언과 관련 기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또한 타 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아카이빙하고 구술자료의 녹취 해제 작업을 진행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보존하고 연구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조사 및 일본군‘위안부’문제와 전시성폭력을 주제로 한 공동연구 지원 사업을 통해 국제적·학술적 연구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외 대중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국·영문 웹진 「결」과 뉴스레터도 발간하여 관련 논평과 연구, 에세이 등을 웹진에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세계시민 연대로 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연대 강화를 도모하며 국제적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기리고 미래세대의 역사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정부 기념식을 개최(’18~)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작품 공모전(’14~)을 개최하여 미래세대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